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3조,
진천군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불우청소년등 관내거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설치연도 : 1986년 12월 9일

- 조례제정 : 1986년 10월 27일

개정 : 1988. 10. 20 조례 제1092호

1988. 10. 22 조례 제1102호

1992. 4. 29 조례 제1326호

1993. 7. 15 조례 제1374호

1993. 12. 6 조례 제1392호

1996. 12. 31 조례 제1542호

1997. 12. 17 조례 제1576호

1998. 4. 11 조례 제1596호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10. 7 조례 제1671호

2000. 10. 28 조례 제1709호

2003. 2. 12 조례 제1799호

전부개정 : 2006. 8. 22 조례 제1932호

2008. 7. 14 조례 제2017호

2009. 7. 30 조례 제2049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	6	293	9	6	3	

II. 분석결과

1. 총 평

-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과 불우청소년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대학생 17명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일반 장학금과 차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
하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4	67	6	6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청소년들에게 일반 장학금과 차별화하여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6백만원, 15명)	○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4백만원, 12명)	67%
'12년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6백만원, 17명)	○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6백만원, 17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 진 학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과 생활정착을 위한 지원	- 청소년(중,고,대학생) 장학금 -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정착 지원금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불우청소년 등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학업 및 생활정착등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자립지원금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습분위기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속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 지원사업	6백만원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정적인 학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탄력적인 운영 및 재원확보를 위해 필요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청소년기본법 및 진천군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의 예치금 293백만원 및 발생이자 등으로 충당되며 매년 발생이자의 10%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학업분위기 조성에 사용되고 있음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289	%	293	%	29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82	98	285	97	290	97
	예수금						
	이자수입	7	2	8	3	9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89	%	293	%	299	%
	비용자성사업비	4	1	4	1	6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85	99	289	99	293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모범청소년 및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사기양양에 기여토록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의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 설치 연도 : 1992년 12월 21일
 - 조성액 : 100,000천원(1998년 조성완료)
 - 조례제정 : 1991. 12. 31일 조례 제1313호
 - 조례개정 : 1994. 5. 6일 조례 제1414호
1998. 9. 23일 조례 제1621호
2001. 6. 13일 조례 제1739호
2003. 12. 31일 조례 제1829호
2006. 8. 9일 조례 제1926호
2008. 7. 14일 조례 제2017호
2010. 12. 16일 조례 제2120호
2011. 6. 30일 조례 제2147호
2012. 6. 25일 조례 제2212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	2	103	2	2	-	103	

II. 분석결과

1. 총 평

- 가정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중 각각 중학생 100,000원, 고등학생에게 150,000원을 지급하여
-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 일반 장학금과 차별화하여 교육 지원을 함으로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을 지향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	2	100	2	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하여 일반 장학금과 차별화하여 교육 지원을 함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자활의식 고양과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을 지향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2백만원, 18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2백만원, 18명)	100%
'12년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2백만원, 18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2백만원, 18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육성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중 중고등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중 학생 : 100,000원 이내 - 고등학생 : 200,000원 이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연간 계획에 의거 정기적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 사업을 추진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2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장학금지원사업	2,200천원	신축적 집행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장학기금 : 100백만원(자치단체출연금)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분		'10		'11		'12		비고
수입	합계	104	%	105	%	106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02	98	103	98	103	97	
	예수금							
	이자수입	2	2	2	2	2	2	
	기타수입							
지출	합계	104	%	105	%	106	%	
	고유목적사업비	2	2	2	2	2	2	
	용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2	98	103	98	103	9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운용되는 장학 사업으로 존치 필요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진천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설치 연도 : 1995년
 - 조 성 액 : 500,000천원
 - 조례제정 : 1995. 04. 20. 조례 제1450호
 - 조례개정 : 1996. 05. 16. 조례 제1499호
 - 1996. 06. 17. 조례 제1505호
 - 1996. 12. 16. 조례 제1531호
 - 1997. 12. 17. 조례 제1577호
 - 1998. 0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2006. 04. 12. 조례 제1909호
 - 2009. 07. 30. 조례 제2049호
 - 2010. 12. 16. 조례 제2120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2011. 03. 15. 조례 제212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6	15	565	16	15	1	

II.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20회)
- 노인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클럽 육성 및 장기바둑대회 운영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전통공예 솜씨대회 및 지도자 교육 실시
- 노인복지기금 사업 활성화로 노인대학 운영 확대 요구와 수요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기금사업 추진으로 노인 인권신장을 위한 토대 마련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노인복지기금사업 활성화가 기대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	13	100	15	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 진천군 노인대학 운영 및 자원봉사클럽 육성, 장기바둑대회 및 전통공예솜씨대회, 지도자교육과 어린이 보호활동 등을 추진하여 노인의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제고시켰음.
- 대내외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사업 확대 추진 필요성 제기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교육사업비지원 - 8백만원, 135명 ○ 어린이 보호활동 - 2백만원, 120명 ○ 들국화봉사단 활동비지원 - 1백만원, 120명 ○ 장기바둑대회 및 전통공예솜씨대회 - 1백만원, 60명, 40점 ○ 지도자 교육 - 1백만원 1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교육사업비지원 - 8백만원, 135명 ○ 어린이 보호활동 - 1백만원, 120명 ○ 들국화봉사단 활동비지원 - 1백만원, 120명 ○ 장기바둑대회 및 전통공예솜씨대회 - 1백만원, 60명, 40점 ○ 지도자 교육 - 1백만원 134명 	100%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운영 - 10백만원, 150명 ○ 자원봉사클럽육성 - 1.3백만원, 육성대회 운영 ○ 장기바둑대회 운영 - 0.5백만원, 대회 운영 ○ 노인전통공예솜씨대회 - 0.5백만원, 대회 운영 ○ 지도자교육 - 2.2백만원, 교육 실시 ○ 어린이보호활동 - 0.5백만원,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운영 - 10백만원, 150명 ○ 자원봉사클럽육성 - 1.3백만원, 육성대회 운영 ○ 장기바둑대회 운영 - 0.5백만원, 대회 운영 ○ 노인전통공예솜씨대회 - 0.5백만원, 대회 운영 ○ 지도자교육 - 2.2백만원, 교육 실시 ○ 어린이보호활동 - 0.5백만원, 활동 진행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교육사업비 지원 - 어린이 보호활동 - 들국화봉사단 활동비 지원 - 장기.바둑대회 - 전통공예 솜씨대회 - 지도자 교육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어르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노후생활에 기여한 바 크다고 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대학 운영	10백만원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
② 자원봉사클럽육성	1.3백만원		상
③ 장기바둑대회운영	0.5백만원	- 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호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	상
④노인전통공예 솜씨대회	0.5백만원		상
⑤지도자교육	2.2백만원	금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상
⑥어린이보호활동	0.5백만원		상
합 계	1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500백만원을 기본으로 기금적립금의 이자 수익 10%, 집행잔액이나 정산반환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 노인분들에게 배움의 기회제공과 노인단체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교육 등에 사용되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의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574 / %	577 / %	580 /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61	562	564
	예수금			
	이자수입	13	15	1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74 / %	577 / %	580 / %
	비용자성사업비	12	13	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62	564	56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은 진천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노인대학운영, 자원봉사클럽육성, 장기바둑대회, 노인전통공예습씨대회, 지도자교육, 어린이 보호활동 등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존치되어 노인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조직내 지도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에 이른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타 사업과 중복됨이 없이 차별화된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음.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함
- 설치 연도 : 2002년도
 - 조례제정 : 2002. 02. 23. 조례 제1768호
 - 조례개정 : 2006. 08. 09. 조례 제1927호
 - 2008. 07. 14. 조례 제2017호
 - 2009. 07. 30. 조례 제2049호
 - 2010. 12. 16. 조례 제2120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2011. 03. 15. 조례 제2126호
 - 2011. 09. 26. 조례 제2168호<진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	8	350	8	8	-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 3,8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다른 장애우들과 교류하고 친교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단체의 활성화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 신체적·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즐거운 야외활동 및 경기방식의 진행으로 장애우들 간의 합동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결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기금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	8	100	8	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야외활동의 기회 및 만남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한 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의 장을 마련하여 친교의 시간을 제공하고 비장애인에게 는 장애를 체험하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8백만원)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8백만원)	100%
'12년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8백만원)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8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하여 장애인의 야외활동을 도모하고 장애우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동지의식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8백만원	야외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심신수련 및 교우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탄력적인 사업수행과 신축성을 위하여 필요함	상
합 계	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장애인복지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300백만원, 발생이자의 10% 및 집행잔액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및 장애인 야외 활동과 친교의 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353	%	355	%	35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5	97	346	97	347	97
	예수금						
	이자수입	8	3	9	3	10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53	%	355	%	357	%
	비용자성사업비	7	2	8	2	8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46	98	347	98	349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예전의 선천적 장애가 많았던 시대에서 환경 등의 영향으로 후천적인 장애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인권 및 접근권 등의 권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진천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1. 07. 10.
 - 조례제정 : 2000. 08. 08.(조례 제1705호 : 진천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례개정 : 2006. 04. 12.(조례 제1907호 :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2008. 07. 14.(조례 제2017호)
2009. 07. 30.(조례 제2049호)
2009. 11. 19.(조례 제2060호)
2010. 12. 16.(조례 제2120호)
2011. 09. 26.(조례 제2168호)
2012. 11. 12(조례 제223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1	8	390	10	9	1	

II. 분석결과

1. 총 평

- 제2기 진천군 여성대학 운영 지원 : 5백만원
- 여성단체 활동 책자 제작 지원 : 3백만원

- 여성대학 운영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을 마련
- 여성단체의 활동책자를 만들어 여성단체의 홍보 및 여성단체 인식전환 유도 및 사회 전 분야에 여성의 참여 증대 계기 마련
-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관리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있음.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기금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의 계속적 추진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 필요함.

대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아니라 여성단체 회원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참여를 증대시켰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제1기 진천군 여성대학 (3백만원, 50명) ○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 (5.5백만원, 300명)	○ 제1기 진천군 여성대학 (3백만원, 60명) ○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 (5백만원, 300명)	94%
'12년	○ 제2기 진천군 여성대학 (5백만원, 60명) ○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 (3백만원,500부)	○ 제2기 진천군 여성대학 (5백만원, 63명) ○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 (3백만원,500부)	100%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5	8	94	8	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여성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글로벌 이미지 메이킹, 경제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지도자 리더십 함양으로 여성단체회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단체 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형성을 통해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3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2회 진천군 여성대학”을 운영하였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육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되어 여성단체 활성화 유도 및 여성인재 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큰 만족도를 보이고, 계속 운영하자는 건의가 많았음.

여성단체의 홍보 및 여성단체 인식전환 유도, 사회 전 분야에 여성의 참여증대를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을 통하여 여성단체 활동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여성발전기본법, 진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	진천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 단체 및 여성 관련시설등을 지원	- 제2회 진천군 여성대학 운영 -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진천군 여성대학의 운영과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여성대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글로벌 이미지 메이킹,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음.

또한 여성단체 활동 책자 제작을 통해 여성단체 및 여성단체 활동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여성 및 여성단체들의 사회참여를 증대시켰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없음	
	'11	없음	
	'12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제1회 진천군 여성대학	5,000천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적합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하는 것보다 기금형태로 유지 및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상
② 여성단체 활동 책자 제작	3,000천원	여성단체의 홍보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에서 신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상
합 계	8,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출연금을 기본으로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익 10%로 충당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적정하고 사용되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의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343	%	345	%	398	%
	전입금					50	1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34	97	336	97	337	84
	예수금						
	이자수입	8	3	9	3	11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43	%	345	%	398	%
	비용자성사업비	7	2	8	3	8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36	98	337	97	390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기금은 진천군 여성대학의 운영과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만큼 여성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확대 지원하겠음.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없음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단위 : 백만원, %)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 설치연도
 - 조례제정 : 2011. 06. 30.
 - 조례개정 : 2012. 02. 02.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26	11	395	57	11	46	

II. 분석결과

1. 총 평

- 일하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지원(1,376천원)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1년간 본인저축액의 50% 지원(10,450천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기여하였기에 설치목적 및 기대효과에 부합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없음		15	11	7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자활기금을 통해 저소득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본인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근로의지를 고취함. 특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본인저축액의 일부지원(저축기간 3년 중 1년 저축액의 50% 지원)함으로써 통장 중도해지를 방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해당없음		
'12년	- 일하는 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4백만원, 2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11백만원, 19명)	- 일하는 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1백만원, 1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10백만원, 18명)	7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 자활지원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 일하는 수급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본인저축액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자활기금 사업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의 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본인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일하는 수급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1백만원	해당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 안정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는바 기금형태로 지 원하는 것이 타당함	상
②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 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	10백만원		상
합 계	1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전입금 : 50백만원
- 자활수익금 : 268백만원
- 이자수입 : 2백만원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해당없음	%	해당없음	%	326	%
	전입금					50	15
	보조금					6	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	1
	기타수입					268	82
지 출	합 계		%		%	326	%
	비용자성사업비					11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15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자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해 나가고자 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함

- 설치연도: 2001. 09. 07.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0. 12. 30 (조례 제1720호)

개정: 2002. 09. 11 (조례 제1781호)

2006. 04. 12 (조례 제1910호)

2009. 07. 30 (조례 제2049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2,930	560	199,442	15,500	560	14,940	214,382	

II.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에 의거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충청북도 보건위생과-28556(2006.12.12)호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 기금이 2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 기금수입을 전액 예치하였으며,
- 2013년 6월 현재 2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최소보유액(2억원)은 정기에금으로 예치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향후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60	490	87.5	560	560	100

※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560천원 - 상반기(4명), 하반기(4명)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490천원 - 상반기(4명), 하반기(3명)	87.5%
'12년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560천원 - 상반기(4명), 하반기(4명)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560천원 - 상반기(4명), 하반기(4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06년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및 「식품진흥기금 성과 분석결과」에 따라 기금 최저보유금액(2억원)에 달성할때까지 기금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수입 전액을 예치하였음
- 2013년 하반기부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분	지적내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이 2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 기금수입을 전액 예치하도록 권고함	충청북도 보건위생과 -28556 (2006.12.12)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2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	2012년 사업내역 없음	상 중 하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65,954	%	137,561	%	200,002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49,699	75.3	65,394	47.5	137,071	68.5	
	예수금							
	이자수입	1,039	1.6	527	0.4	4,053	2	
	기타수입	15,216	23.1	71,640	52.1	58,878	29.5	과징금 수입
지 출	합 계	65,954	%	137,561	%	200,002	%	
	고유목적사업비	560	0.8	490	0.4	560	0.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65,394	99.2	137,071	99.6	199,442	99.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 존치 필요성 및 향후 조치계획 >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올해 기금 최저 보유금액을 달성한 만큼, 향후 식품 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음식문화수준 향상 및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진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
 - 설치 연도 : 1998. 8. 23(조례제정일:1998. 5. 27.)
 - .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통폐합 : 2004. 12. 21
 - .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005. 1. 14 조례 제1869호]
 - . 개정 2005. 6. 8 조례 제1875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개정 2006. 4. 12 조례 제1915호
 - . 개정 2007. 2. 14 조례 제1950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개정 2007. 6. 21 조례 제1960호
 - . 개정 2008. 1. 7 조례 제1984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개정 2010. 12. 16 조례 제2120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개정 2012. 2. 2 조례 제2193호
 - . 개정 2012. 11. 12 조례 제2236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63	700	1,733	548	448	100	1,833	

II.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상습 수해지역의 피해예방과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주 목적이 있음.
-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사업은 안전 및 복구관련 사업과 중복 되는 측면이 있으나 재난관리 부문은 사전예방차원의 사업으로서 안전점검이나 사후복구 부문과 별개로 판단하기에 사전예방사업의 중요성 만큼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며 재원 조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5	225	100	700	7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원격재난 무선시스템 사업 - 91백만원,4EA ○특정관리대상시설교량보수사업 - 135백만원, 교량2개소	○원격재난 무선시스템 업 - 91백만원, 4EA ○특정관리대상시설교량보수사업 - 135백만원,교량2개소	100%
'12년	○트랙터부착용제설기구입 - 35백만원,16EA ○원격재난 무선방송 시스템 사업 - 42백만원, 2EA ○장양천 노후시설물 긴급 보수사업 - 200백만원, L=500m ○재난안전네트워크 홍보물 제작 - 3백만원, 300개 ○장양교 보수보강공사 - 129백만원, L=120m ○장관교 보수보강공사 - 78백만원, L=120m ○마두마을 암거설치공사 - 33백만원, 암거1식 ○송림지구 노후제방 보수공사 -60백만원, L=70m ○신촌소하천 제방보수 공사 -80백만원, L=150m ○덕산한천 노후제방 보수공사 - 40백만원, L=80m	○트랙터부착용제설기구입 - 35백만원,16EA ○원격재난 무선방송 시스템 사업 - 42백만원, 2EA ○장양천 노후시설물 긴급 보수사업 - 200백만원, L=500m ○재난안전네트워크 홍보물 제작 - 3백만원, 300개 ○장양교 보수보강공사 - 129백만원, L=120m ○장관교 보수보강공사 - 78백만원, L=120m ○마두마을 암거설치공사 - 33백만원, 암거1식 ○송림지구 노후제방 보수공사 -60백만원, L=70m ○신촌소하천 제방보수 공사 -80백만원, L=150m ○덕산한천 노후제방 보수공사 - 40백만원, L=80m	100%

- 본 기금사업은 재해발생위험이 높아 주민의 인명피해우려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함.
- 재난관리기금사업은 긴급한 구간의 신규가 아닌 보수보강 위주의 사업선정이 중요하며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에게 재해 예방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진천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도 - 백곡교 기금사업 교량상장 L=8m ○ 2011년도 - 원격재난무선방송시스템구축 기금사업(4EA) - 특정관리대상교량보수 기금사업 (당골교, 근어교) ○ 2012년도 - 트랙터용 제설기구입 기금사업 16EA - 원격재난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기금사업(2EA) - 교량보수 기금사업 2개소 - 하천제방 보수 기금사업 4개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재난기금사업을 통한 상습 재해 피해지역을 사전정비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함.
- 재난무선방송시스템 구축 및 제설기 보급사업으로 재난재해를 예방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 특이사항 없음	
	'12	- 특이사항 없음	
	'13	- 특이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특이사항 없음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2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①트랙터부착용 제설기 구입 사업	35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②원격재난무선방송시스템 사업	42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③장양천노후시설물 긴급보수사업	200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④재난안전네트워크 홍보물제작	3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안정성	상
⑤장양교 보수보강 공사	129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⑥장관교 보수보강 공사	78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⑦마두마을 암거설치 공사	33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⑧송림지구 노후 제방 보수공사	60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⑨신촌 소하천제방 보수공사	80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⑩덕산한천 노후 제방 보수공사	40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상
합 계	700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원의 한정성 및 사용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 시설의 신설, 사유시설 재난피해에 대한 사용 제한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의 목적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관련법에 따라 군비출연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운용
- ‘ 12년 군비 531백만원, 도비보조금 170백만원 이자수입 30백만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 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818	%	2,095	%	2,434	%	
	출연금	297	64	313	68	363	64	
	보조금	88	36	88	32	170	36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352		1,634		1,870		
	예수금							
	이자수입	81		60		3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818	%	2,095	%	2,434	%	
	고유목적사업비	184	100	225	100	701	100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634		1,870		1,733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대비가 강화되는 추세에 본 기금이 사전재해예방 사업으로 보다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급한 자연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하고자 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기재
 -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누적되어 적립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잔액이 한도액 이상이면 더 이상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 마련을 건의
 - 장기적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금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필요시 사용용도에 대한 확대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
 - 인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
 - 설치년도 : 1983년
 [인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 제정 : 1996. 6. 17 (조례 제1507호)
 - 개정 : 1996. 11. 8 (조례 제1524호)
 - 1997. 12. 31 (조례 제1585호)
 - 1998. 9. 22 (조례 제1613호(인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1999. 1. 9 (조례 제1635호)
 - 2008. 7. 14 (조례 제2017호)
 - 2009. 7. 30 (조례 제2049호)
 - 2012. 6. 7 (조례 제2211호)
 - 폐지 : 2013. 5. 9 (조례 제2268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7	14	604	11	10	1	'13년 기금폐지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농업인학습단체(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의 기금조성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전문인력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 군출연금, 농업인학습단체, 회비,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익 10%, 집행잔액이나 정산반환금으로 조성하여
- 농업과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농촌 후계세대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환경보전선도,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 등의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4	93.3	15	14	9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매년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화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4-H단체 현지연찬 교육(4백만원, 50명)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3백만원,50명)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2명)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2명)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교육(1백만원,34명)	○4-H단체 현지연찬 교육(4백만원,50명)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3백만원,50명)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2명)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2명)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교육(1백만원,34명)	100%
'12년	○4-H단체 현지연찬 교육(5백만원, 50명)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3백만원,50명)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2명)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2명)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교육(1백만원,34명)	○4-H단체 현지연찬 교육(4백만원,50명)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0명)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2명)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교육(2백만원,52명)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교육(1백만원,34명)	8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농촌진흥법 제5조,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	○ 4-H회 지원 ○ 농촌지도자회 지원 ○ 생활개선회 지원 ○ 농업경영인 지원 ○ 여성농업인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매년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없 음
	'11	없 음
	'12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 음	
기 타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천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없 음	※ 2013년 기금 폐지		상 중 하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는 농촌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재원은 출연금을 기본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회비,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익 10%, 집행잔액이나 정산반환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등의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609	%	614	%	61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94	98	598	97	600	
	예수금						
	이자수입	15	2	16	3	1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09	%	614	%	618	%
	비용자성사업비	11	2	14	2	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98	98	600	98	60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농업인단체 운영 및 조직강화, 농업인대회 및 우수회원 시상, 영농과제 자금지원,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선진농업연수, 우수농산물 홍보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앞으로 농업인단체가 자립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농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로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이자수익이 적어 차별화된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렵고,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13년 5월 9일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함(공포번호 제 2268호).